

# 내부정보관리규정

(주)에스켄

# 내부정보관리규정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원,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 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- “임직원”이라 함은 당사의 이사, 감사, 직원, 고문, 상담역, 대리인, 임시직 및 파견근로자를 말한다.
- “주식 등”이라 함은 주권,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.
- “내부자거래”라 함은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의 중요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당사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당사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정보 공시책임자를 말한다.
- “공시담당자”라 함은 공시책임자를 보조하는 중요정보 공시담당자를 말한다.

### 제3조(중요정보의 발생)

- ① 중요정보는 별표 「중요정보편람」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주요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판단에 따르며,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판단의 근거자료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(중요정보의 관리)

-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당사의 중요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직원에 대한 정보의 전달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이를 하여야 한다.
- ③ 배우자, 가족, 친지, 친구 등 사외의 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전달은 엄중히 금지한다.
- ④ 사내의 공공장소 또는 일반적인 공개장소에서는 중요정보를 화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5조(소관부서)

-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별표 「중요정보편람」에 기재된 바와 같다.
-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,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, 검토,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, 이사회결의 등 중요정보 생성에서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일시,

장소,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.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당해 중요정보관리에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, 자료의 보관, 지출 및 복사 등에 있어 이를 관리. 파악하여야 한다.

⑤ 각 부서의 장은 증권회사, 투자자문회사, 투자신탁회사 등의 임직원이 투자정보 파악을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는 때에는 중요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방문회사, 방문자의 인적사항, 면담내용 등에 관한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**제6조(중요정보의 사외위탁)**

당사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외자와의 협의나 자문 등 협조를 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비밀보장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 **제7조(공시책임자 등)**

① 당사는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둔다.

②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로서 당사를 대표하여 공시 기타 중요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공시책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「중요정보편람」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해당 중요정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8조(중요정보의 공개)

-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중요정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거나 혹은 공시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때에는 거래소를 통하여 소정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행하고 지체없이 거래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.
- ③ 중요정보의 공개전에 중요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어 부당하게 이용됨으로써 불공정한 주식매매거래가 행하여 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중요정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개되기 이전에 보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.
- ④ 중요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된 때,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된 때, 방송법에 의한 방송(특수방송을 제외한다)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때 및 거래소가 설치·운영하는 공시방송망을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.
- ⑤ 각 부서의 정보관리책임자는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.

## 제9조(보도기관으로부터의 취재)

- ①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5조제5항의 규정은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.

### **제10조(주식 등 매매거래의 금지)**

① 임직원은 중요정보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 당사 발행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### **제11조(통상의 매매의 자유)**

임직원은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, 당사의 자회사, 관계회사 및 거래처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 내지 제15조의 제한 및 의무에 따라야 한다.

### **제12조(중요정보업무 참여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매매)**

① 당사의 기획, 재무, 경리, 홍보 및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신기술, 신제품 등의 연구, 개발, 기획 및 상품화 업무 등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당사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요정보에의 해당여부에 특히 유의하고 사전에 임원은 대표이사에게, 직원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소관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.

③ 대표이사와 소관부서장은 중요정보로서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

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저지하여야 한다.

④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후 24시간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)이 경과할 때까지 중요정보로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할 수 있다.

### **제13조(임원의 당사주식 등의 매매)**

① 임원이 당사 주식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공시책임자는 임원의 당사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3조 및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(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)와 거래소에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# **제14조(단기매매차익 반환)**

임직원이 당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
### **제15조(자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)**

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당사의 자회사, 관계회사 및 거래처(이하 "자회사 등"이라 한다)의 미공개 중요정보는 엄중하게 이를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알게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**제16조(교육)**

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요정보 관리에 관한 지도교육을 행하고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제정취지를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.

## **제17조(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우선적용)**

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.

## **부 칙**

### **제 1조(시행일)**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